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12. 29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2월 10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6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제2차(99. 12. 28)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김영길)

가.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 지정,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입증지판매인을 시장, 읍·면·동장이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안 제8조)
-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과 수입증지판매신청시 인감조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9조, 제10조제2항)
-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하여 완화함(안 제12조)

(제8차 본회의)

○ 수입증지 판매인의 승계제도를 폐지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철호)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증지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신고”로 규제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 및 기타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중지판매 및 구입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 음